

국가표준기본법 제23조와 동법 시행령 제16조 및 공인기관인정제도 운영요령 제15조의 규정에 의거 "법과학 시험기관 인정을 위한 추가기술요건 " (기술표준원 고시 제2008-302호 : 2008.06.17)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 합니다.

2012년 2월 17일

기 술 표 준 원 장

법과학시험기관 인정을 위한 추가기술요건 개정

구분	규격번호	규격명	규격내용
개정	KOLAS-SR-014	법과학시험기관 인정을 위한 추가기술요건	별첨

[별첨] : 1. 개정전문(KOLAS-SR-014)
2. 신규대조표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고시는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폐지고시) 이 기준의 시행과 동시에 종전의 법과학 시험기관 인정을 위한 추가기술요건(기술표준원 고시 제2008-302호 : 2008.06.17)은 폐지하며, 종전의 지침에 따른 기타 행위는 이 기준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. 끝.